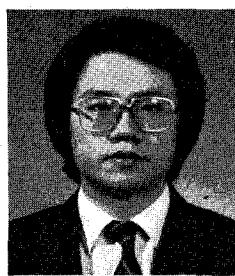


미국의 가공란 검사법

최근 계란을 이용한 액란, 난분등의 생산과 더불어 그 가공율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난가공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양계인들이 가공란에 대해 그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할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란 검사에 통과해야 하므로 그 나라의 검사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자는 최근 일본에서 발행되는 「가금연구」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미공법(Public Law) 91-597의 “가공란 검사법”을 재번역하여 난가공업자를 비롯한 양계인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한다.……………(訳者註)

농유공
종합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유 익 종



제 1 조 (법률의 명칭 등) 생략

제 2 조 (입법과정에서의 사실인정) 난과 가공란은 미국 전체의 식품소재 중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여러가지 형태의 식품소재로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소비된 대부분의 계란과 가공란은 각주(州)간에 또는 대외적으로 유통되어 왔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거나 또는 소비자가 소비한 식품의 가공에 이용되기도 하므로 큰 의미를 갖는다. 난과 가공란이 위생적이며 이물을 함유하지 않고, 적절한 표시, 포장이 되어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정한 모든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비위생적이며 이물을 함유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표시와 포장이 된 가공란의 경우, 난 품질의 취급 및 처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중복지에 유해하며 또한 위생적이며 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표시, 포장이 된 난 및 가공란에는 그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동일한 양상으로 생산자와 가공업자에도 여러가지 손해를 미치게 된다.

비위생적인 것 또는 이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표시와 포장이 된 생산물은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위생적인 것 또는 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한 표시와 포장이 되어 있는 생산물과는 불공정한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본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한 모든 가공란과 소정품질의 난 취급은 각주(州) 간 혹은 대외유통에 있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러한 난 및 가공란의 취급은 본법의 취지에 의거한 미농무성과 보건, 교육, 후생성의 양쪽 장관 규제나 각주(州), 기타 공공단체의 협력으로 취급상의 문제점을 예방, 제거하여 난 및 가공란의 취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제 3 조 (정책의 선언) 일정한 가공란의 검사, 일정한 품질난의 처분과 규제, 난 규격의 통일 혹은 이물을 함유하거나 위법표시되거나 또는 본법에 위반된 난과 가공란이 식품으로서 유통되어 판매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 규정된 것과 같이 난과 가공란의 처리와 유통을 규제하는 일에 대해 의회에서 채택되어 정책으로 확정된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제 4 조 (정의) 본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 「이물을 함유함이란 다음과 같은 상태가 하나 이상이 있는 난과 가공란에 적용된 용어이다.

(1) 난과 가공란이 건강에 해를 주는 유해물질이 부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단, 당해물질이 점가된 것이 아닌 경우 제품의 안팎에 이러한 물질의 양이 통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일 경우에는 그 제품은 본 항에 의하여 이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A) 농무장관이 당해물을 식품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유독한 첨가물 혹은 유해물질(즉 ① 원료농산물 내외부의 살충제, ② 식품첨가물, ③ 착색제 이외의 것)이 부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

(B)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원료농산물 등이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408조에 해당하여 위험하다고 한 살충제가 부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

(C)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409조에 해당하는 위험한 식품첨가물이 부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

(D)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706조에 해당하는 위험한 착색제가 부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단, (B), (C), (D) 항에 의해서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식품에서도 살충제, 식품첨가물 및 착색제의 공인사업장에서의 사용이 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어느 정도 불결, 부패 또는 분해된 물질이 있거나 하여 식품으로 부적당한 경우.

(4) 당해물품이 불결한 것으로 오염이 완료된 것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완료된 것,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취급, 포장, 보관되어 있는 경우.

(5) 당해 난이 부화용으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부화적격란의 가공품이 있는 경우.

(6) 용기가 내용물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으로 변

화되어 있는 것이나 유해 혹은 유해물질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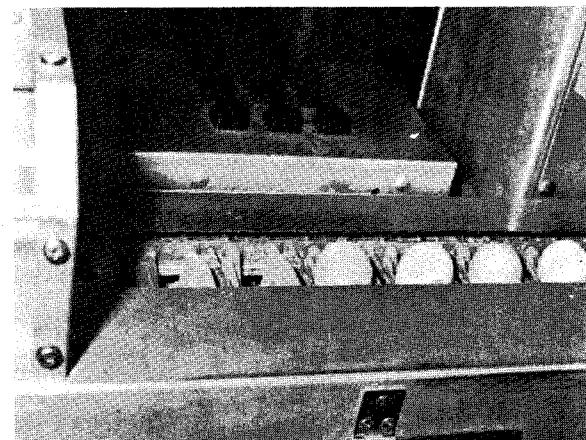
(7) 당해물품이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조사된 경우. 즉 방사선 조사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409조에 의거한 규제 혹은 적용범위에 따라서 실시된 경우는 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8) 어떤 중요한 성분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제거되거나 또는 추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 대체되어 있는 경우, 혹은 손상은 없으나 나쁜 변화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의 용적이나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품질이나 강

▼ 가공단계에서 검사방법을 알아야 질적 수준향상이 이루어진다.



▼ 자동화장치로 완벽하게 검사되는 장면



도를 낫추기 위해서나 또는 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질이 첨가되거나 혼입, 봉입되어 있는 경우.

(나) 「식품으로 사용가능」이란 용어는 난, 가공란이 변성되어 있지 않는 한 또는 농무장관 공포의 규칙에 근거하여 식품으로서 사용중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모든 난, 가공란이 이에 적용된다.

(다) 「취급」이란 주(州) 간의 취급, 대외취급 또는 주(州)내의 취급을 가리킨다.

(라) 「용기」 또는 「포장재」란 용어는 모든 상자, 양철, 주석, 플라스틱제품, 기타 용기, 포장지 및 외장재 등을 가리킨다.

(1) 「직접용기」란 모든 소비용 용기를 가리킨다. 또는 거기에 가공란을 넣어서 직접내용물이 접촉하는 용기를 가리킨다.

(2) 「수송용기」란 「직접용기」를 넣어서 운반하는 용기 모두를 가리킨다.

(마) 「난취급업자(생산자 혹은 비생산자로서)」 난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난을 처리하는 자, 식품의 조제에 난을 이용하는 자를 가리킨다.

(바) 「가공란」이란 첨가성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조, 동결 혹은 액상의 난을 모두 가리킨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소량밖에 가공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것, 또는 종래부터 소비자가 난 식품 산업의 생산물로 간주되는 것으로 농무장관이 판단하는 것 및 난 성분의 배합이 전혀 없으나 그와 같은 것이 가공란으로 명명돼도 좋다고 농무장관이 인정하는 가공품.

(사) 「난」이란 사양된 닭, 칠면조, 집오리, 거위, 베추리 등의 껌질있는 난을 말한다.

(1) 「파란」 난각이 파손되어 있거나 잔금이 있으나 난각막이 파손되지 않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2) 「청결, 정상난」 불결한 것 혹은 이물의 부착이 없고 난각이 파손되어 있지 않고 잔금이 없는 것을 말한다.

(3) 「오염난」 난각이 파손되지 않았으나 불결한 것 혹은 이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4) 「부화부적격란」 부화용에 사용되고 부화 중에 무정란 혹은 부화되지 않는 것으로 제거된 난을

말한다.

(5) 「식용이 불가능한 난(불가식난)」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흑색부패란(black rots)
- 황색부패란(yellow rots)
- 백색부패란(white rots)
- 혼합부폐란[혼탁란] (Mixed rots-addled eggs)
- 산폐란(Sour eggs)
- 녹색난백란(green whites)
- 난각부착난황란(stuck yolk)
-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난(Moldy eggs)
- 곰팡이란(musty eggs)
- 혈액환란(blood rings)
- 부화중지란[혈액환 단계 혹은 그것을 초과한 것] (embryo chicks)

(6) 「누출란」 난의 내용물이 누출하여 있거나 누출 중 혹은 누출이 어느 정도 되어 난각의 파손 또는 금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로스」(loss)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품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난.

- 눌려져 보기흉하거나 또는 나누어져서 내용물이 누출 중에 있는 것.
- 과도하게 가열된 것 또는 동결된 것 혹은 미생물에 오염된 것.
- 부화부적격란
- 혈액이 혼입된 난백, 커다란 고기반점(meat spot)이 있거나 대량의 혈액 또는 이물이 함유된 것.

(8) 「용도제한란」 파손된 난(파란) 오염된 난(오염란), 부화부적격란, 불가식란, 누출란, 로스(loss) 등을 가리킨다.

(아) 「공정포장·표시법」이란 1966년 11월 3일 제정, 그후 개정 보충된 동법을 말한다.

(자)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이란 1938년 6월 25일 제정, 그후 개정, 보충된 동법을 말한다.

(차) 「검사」 본법의 모든 규정의 실시에 따라서 농무장관이 필요하다고 본 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카) 「검사원」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1) 본법에 의해 난 또는 가공란검사의 면허를 얻

최근 계란을 이용한
액란, 난분 등의 생산과 더불어
그 가공율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난가공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양계인들이 가공란에 대해
그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수출을 할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란 검사에 통과해야 하므로
그 나라의 검사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자는 최근 일본에서 발행되는
『가금연구』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미공법 (Public Law)
91~597의 “가공란 검사법”을 재번역하여
난가공업자를 비롯한 양계인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역자註)

은 연방정부의 직원

(2) 본법에 의해, 또는 농무장관과 각주(州) 혹은 지방공공단체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난 또는 가공란검사의 면허를 농무장관으로부터 얻은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타) 「위법표시」 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조건을 혼란시키지 않게 표시, 포장이 되어있는 가공란에 적용된다.

(파) 「공식증명서」 검사원 혹은 본법하에 공식적인 모든 기능을 가진 자가 발행하고 또 농무장관공포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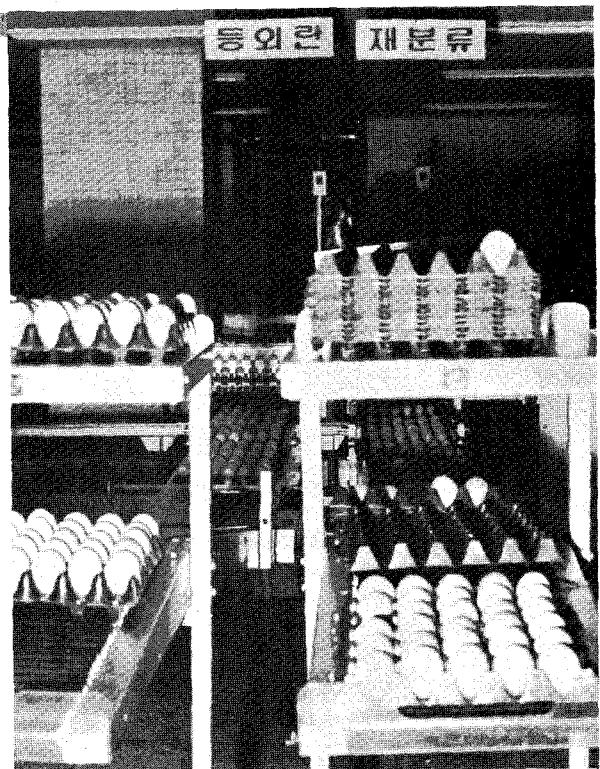
(하) 「공식의장표」 공식검인을 함께 따라 사용가능하고 농무장관에 의하여 규정 또는 인정된 의장을 말한다.

(거) 「공식검사명표」 가공란이 본법에 따라서 검사된 것을 표시하며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표식을 말한다.

(너) 「공식검인」 본법하에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검사명표 혹은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다) 「공인사업장」 농무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거기에 본법에 의거한 가공란 제조의 검사를 농무성이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라) 「공정규격」 본법의 효력발생시유효(앞으로 의 개정을 포함), 1946년에 제정한 농산물 유통법 하에, 난의 품질, 등급 및 중량구분에 관계되는 규격을 말한다.



▲ 상품위생처리만으로 질적향상은 되지않고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며) 「살균」 유해하며 또한 생존능력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농무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규정된 공정에 의하여 가공란의 전부를 가열하거나 또는 기타의 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버) 「자(者)」 개인, 협업, 기업, 협동조합, 기타의 사업단위 모두를 말한다.

(서) 「살충제」, 「식품첨가물」, 「착색제」 및 「원료농산물」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의 경우와 같다.

(어) 「사업장」 가공란이 처리되는 장소를 말한다.

(저) 「처리」란 가공란의 제조를 의미하며 할란, 여과, 혼합, 조합, 살균, 제당(除糖), 냉각, 동결, 건조, 포장을 포함한다.

(처) 「장관」 농무장관이나 혹은 그의 대리자를 말한다.

(커) 「주」 합중국의 각주, 푸에르토리코, 아일란드 및 위싱톤특별구를 말한다.

(터) 「합중국」 주전체를 말한다. (계속)